

퇴직급여금 지급 신청서

※ 뒤쪽의 작성요령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90일
①신청인	성명(한자) ()	주민등록번호	-
	현주소 (전화번호 :)		
대 상 자	② 성명(한자) ()	③ 주민등록번호	-
	④ 계 급	⑤ 입대일자	
	⑥ 군 번	⑦ 퇴직일자	
	⑧ 전투근무기간	⑨ 복무기간	
	⑩ 형벌사항 []있음 []없음	⑪ 전역급여금 수령여부 []있음 []없음	
	[]형 확정 형명 : 확정일 : 형량 :		
※확인관 기재란	성명(한자) ()	생년월일(군번)	
	복무기간산정 및 확인	공제액	원
	형벌사항확인		
	확인자 소속 계급 성명 (서명 또는 인)(전화번호 :)		

본인은 「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」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급여금 지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대리인 (서명 또는 인)

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귀하

신청인(대표자) 첨부서류	1. 대상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(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유족에 한정합니다) 1부 2.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·수령을 유족이 하는 경우에 동순위 재산상속인이 2명 이상인 때 가. 별지 제2호서식의 유족대표자 선정서(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로 한정합니다) 1부 및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1부 나. 별지 제3호서식의 다수 신청인 서명서(유족대표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로 한정합니다) 1부 다. 별지 제4호서식의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·수령 포기서(퇴직급여금 지급 신청·수령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) 1부 및 신분증 사본 1부 3. 별지 제5호서식의 퇴직급여금 지급 신청·수령 위임장(신청인이 이민·임원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) 1부 4. 병적 자료 등으로 퇴직 또는 사망 당시의 계급이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또는 사망 당시 계급을 확인할 수 있는 2명의 확인서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5.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1부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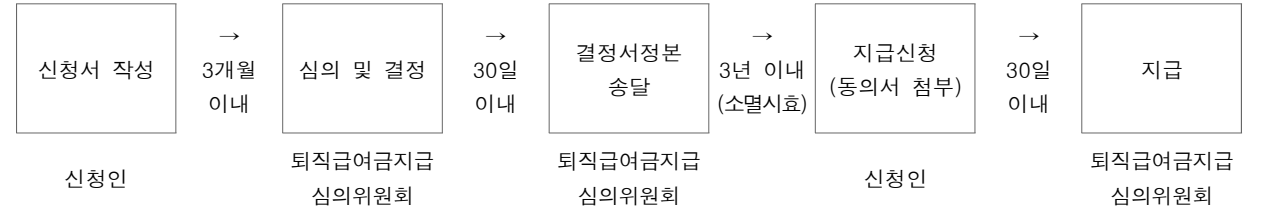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(대표자) (서명 또는 인)

작 성 요 령

- 1. ①란의 신청인 중 유족대표가 선정되지 아니하여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이용하여 「민법」상 재산상속권자 모두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2. 신청인과 대상자가 동일인일 경우에는 ②·③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.
- 3. ⑧란의 전후근무기간은 「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4조제3항에 따른 참전기간을 기록합니다.
- 4. ⑨란의 복무기간은 입대한 달(月)부터 퇴직한 달(月)까지의 복무기간을 산정하여 기록합니다.
- 5. ⑩란의 형벌사항은 "[] 있음, [] 없음" 중 해당하는 []란에 "√"표시를 한 후 「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」 제16조에 해당할 경우 우측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십시오.
- 6. ⑪란의 전역급여금 수령여부는 "[] 있음, [] 없음" 중 해당하는 []란에 "√"표시를 하여 주십시오.
- 7. ※란은 확인관 기재사항이므로 기재하지 마십시오.

처 리 절 차



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,
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거나
결정서 정보를 송달받은 후 60일 이내(혹은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5개월이 경과한 후)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